

진 정 서

진 정 인 군인권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4층
(연락처 : 02-7337-119)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정경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연락처 : 02-748-1111)

육군참모총장 서욱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57호
(연락처 : 042-551-6969)

국군수도병원장 한호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지 국군수도병원
(연락처 : 031-725-5114)

피 해 자 하사 A

진 정 취 지

진정인은 아래의 진정이유로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였음에도 육군참모총장, 국군 의무사령관 등이 「군인사법 시행규칙」 상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에서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하여 의무조사를 진행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임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육군참모총장에게

2020. 1. 11. 09:30 으로 예정된 피해자에 대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개최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이 사건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심사기일을 피해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위한 OO지방법원 201900000000 등록부정정 사건의 결정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국군수도병원장에게

피해자가 성전환수술을 한 뒤에 이뤄진 의무조사의 결과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진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 (1) 피해자는 MTF 트랜스젠더로, 육군 0000부대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하다 소속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하였고, 이후 젠더 디스포리아 증상이 심각하다는 국군수도병원의 진단[별첨1]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국외여행 허가절차[별첨2]를 거친 후 2019. 11. 27. 출국하여 2019. 11. 29.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19. 12. 20. 에 정상 복귀하였으며 2019. 12. 23.부터 국군수도병원에서 가료중입니다.
- (2) 위 수술 후 2019. 12. 26. 피해자는 OO지방법원에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였고, 현재 위 신청사건은 OO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 (3) 그런데 피해자가 성전환수술을 마친 후 국군수도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한 의무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하여 ‘양측성 고환 결손’, ‘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육군본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육군본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제1항의 2호에 따라 피해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 (4) 피해자는 2020. 1. 16. 육군참모총장에게 OO지방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20. 1. 20. 부 피해자는 육군으로부터 예정된 2020. 1.

22.의 심사기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진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실시와 육군본부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는 부당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군수도병원장은 피해자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심신장애인이라 결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장애 정도를 판정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갖게 된 트랜스젠더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있어 장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군이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심신장애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입니다.

그런데 국군수도병원장은 기존의 진단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젠더 디스포리아를 극심하게 겪은 바 있는 트랜스젠더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전환수술을 한 피해자의 성별을 남성으로 취급하여 의무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장애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이러한 국군수도병원장의 보고를 수리하여 피해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령 상 심신장애인의 전역은 심신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한 상태로 법적 성별을 남성

서 여성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다면 남성의 성기가 없어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군수도병원장의 의무조사 결과 보고는 완전히 무효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역심사위원회의 결과는 법원의 결과에 기속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전역심사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하고 그대로 심사를 강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육군참모총장이 트랜스젠더인 피해자를 여전히 시스젠더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로 연기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신청을 반려한 육군참모총장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은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 등이 전무한 입법부작위에 있는 바,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제반 법령, 규정, 지침을 제·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진정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별첨 자료

[별첨 1] 하사 A에 대한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평가보고서

[별첨 2] 하사 A의 사적국외여행허가 관련 서류 일체

2020. 01. 20.

진정인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중